

## 「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」

### 제1조 적용범위

“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, “급여하나 월복리 적금” 또는 “연금하나 월복리 적금” 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.

### 제3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중에서 정합니다.

### 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150만원 이내입니다.

### 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

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.

### 제7조 자동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은 가입일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,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,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.
- ② 자동 재예치 선택후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.
- ③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.
- ④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 제8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월복리로 셈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단리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
-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를 단리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
**제9조 우대금리**

이 예금은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3%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하며,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중도해지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우대항목	내 용
주거래하나 우대 (연0.8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/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<sup>(주)</sup> 1종 보유한 경우 (월1회 이체)
주거래플러스 우대 (연1.2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/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<sup>(주)</sup> 2종 이상 보유한 경우(월1회 이체)
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0.1%)	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

(주) 주거래실적 종목별 인정기준 :

- 급여 입금 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 의미 적요(급여,상여 등)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된 자금
- 연금입금 : 국민연금/공무원연금/사학연금/군인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,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(주택연금,연금신탁,연금보험, 연금펀드), 기타연금(연금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,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된 자금)
- 하나카드(현대카드) 결제대금(신용/체크), 하나카드(BC카드) 가맹점대금 입금, 공과금 출금, 아파트관리비 출금,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(청년우대형 포함)

**제10조 특별중도해지**

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, 이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.

- 본인 결혼, 출산, 주택구입, 자녀 학자금

**제11조 일부해지**

- ① 일부해지는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동안 2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가능하며, 일부 해지금액에 대하여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**부 칙(1)**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9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